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23. . . (제 회)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제출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에 관한 규정을 법률로 상향시키도록 「소프트웨어 진흥법」이 개정('23.10.19 시행)됨에 따라 일부 관련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에 관한 규정이 법률로 상향됨에 따라 관련 조항과 별지의 체계·자구를 정비(안 제10조제3항, 별지 제11호서식)

4. 주요토의과제

없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전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 호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영 제18조제5항”을 “영 제18조제4항”으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5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4항”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0조(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 인증서의 발급 등) ①·② (생략)	제10조(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 인증서의 발급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영 제18조제5항에 따라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에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을 유지·향상하기 위하여 실시한 활동에 관한 실적자료를 첨부하여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영 제18조제4항----- ----- ----- ----- ----- ----- ----- ----- ----- ----- -----.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산업과	
연락처	(044) 202 - 6331